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2022년 6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overseas.mofa.go.kr/cn-ko/index.do



유의사항



1. 사증발급신청서에 입국목적, 연락처, 직업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사유가 되며 일정기간 사증발급이 제한됨.
2. 위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증불허와 별도로 장기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3. 주민등록등본 등 한국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4. 입국목적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5.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는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음.
6. 구비 서류는 입국목적에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하고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7. 신청인에 대한 직접 면담 필요 등 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및 입국목적의 진위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8. 신분증, 호구부, 결혼증 등 개인 신분 서류나 사진 등 보조 자료는 접수(심사)후 원본을 반환하나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기타 사항은 “사증신청 및 발급절차” 참조.



목 차



단수 사증	외교·공무 (A-1, A-2)	복수 사증	외교 (A-1)				
	일시취재 (C-1)		단기방문 <table border="1"> <tr> <td>공통</td> </tr> <tr> <td>단기일반 (C-3-1)</td> </tr> <tr> <td>단기상용 (C-3-4)</td> </tr> <tr> <td>동포방문 (C-3-8)</td> </tr> </table>	공통	단기일반 (C-3-1)	단기상용 (C-3-4)	동포방문 (C-3-8)
	공통						
	단기일반 (C-3-1)						
	단기상용 (C-3-4)						
	동포방문 (C-3-8)						
	단기방문		단기일반 (C-3-1)				
			일반관광 (C-3-9)				
			의료관광 (C-3-3)				
			단기상용 (C-3-4)				
			순수환승 (C-3-10)				
	단기취업 (C-4-5)		취재, 주재, 기업투자 및 동반가족 (D-5, D-7, D-8, F-3)				
	유학(D-2-1 ~ D-2-8) 한국어 어학연수(D-4-1)						
기업투자 (D-8)	방문동거 (F-1)						
무역경영 (D-9)							
구직 (D-10)	거주 (F-2)						
회화지도 (E-2)							
방문동거 (F-1)	재외동포 (F-4)						
거주 (F-2)							
동반 (F-3)	영주 (F-5)						
결혼이민 (F-6)							
더블 사증	단기방문(A1~A3, C1~C4) 단체(C-3-2)	방문취업 (H-2)					

I 사증발급신청서 소지자가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부착, 사증발급신청서 허가번호 기재),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 장기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D-H) 신청자는 당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90일 이하 체류자격도 제출해야 함)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및 자필로 기재한 사증 신청자 확인서(건강상태확인서, 민원서식 참조)를 추가로 제출
 - ※ 범죄경력증명서는 공증처 공증과 외사판공실의 인증 필요

II 일반적인 사증신청의 경우

단수 사증

1. 외교·공무 (A-1, A-2)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외교(A-1)	-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외교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와 동반가족	1. 외교부 또는 주한공관의 협조공문 ※ 외교관,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30일이내의 외교·공무활동은 사증면제협정 대상이며, 한국 주재목적일 경우 협정에 따라 사증발급 2. 재직증명서(출장 또는 파견기간 명시) 3. (동반가족)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 결혼증,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공무(A-2)	-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공무활동을 하려는 자와 동반가족 ※ A-2-1 외국정부 장기 공무수행자 A-2-2 국제기구 공무수행자 A-2-3 유엔군사령부 파견 외국인군인·가족 A-2-4 외국정부 단기 공무수행자 (공무보통여권 소지자는 주한중국공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및 그 가족만 신청 가능)	

2. 일시취재 (C-1)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단기취재 (C-1)	- 중국의 신문·방송·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하려는 자	1. 파견(출장)증명서 2. 재직증명서 또는 기자증 (외신보도증) 3. 영업집조 부분 (조직기구대마증)의 사본

3. 단기방문 (C-3)

1) 단기일반 (C-3-1)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한국측 구비서류)
단기일반 (C-3-1)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문화 예술,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 참가자 ※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는 자는 단기취업(C-4-5) 사증 신청	1. 초청장 -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 내용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영업집조 부분(조직기구대마증)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한국정부 초청의 경우> 1.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초청장 2. 재직증명서
	일반연수	-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자	1. 초청장 -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 내용 포함 2. 연수계획서 또는 일반연수 입증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4. 영업집조 부분(조직기구대마증)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친지방문 등	- 결혼식 참석 등 국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단기간 방문하려는 자 - 병간호, 가족사망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자	1. 초청장 -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 내용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친인척관계 입증자료 (공적공부상 친인척으로 증명되는 자료)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결혼식 참석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확인서 추가 제출 1. 병간호 : 한국 병원 발급 진단서 가족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주한중국공관의 공한 2. 해당인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 친인척관계 입증자료 (공적공부상 친인척으로 증명되는 자료) 4.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관할지역 관계없이 신청가능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한국측 구비서류)
단기일반 (C-3-1)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 복수사증 신청 가능	-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가 거주목적 이외의 사유로 단기방문 하려는 자 ※ 결혼이민(F-6-1) 목적으로의 체류자격변경 불가 ※ 한·중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자는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불가(외국여권으로 출국불가)	1. 초청장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호구부 원.사본(혼인상황 신고필요) 5. 거주증(호구부가 외지인 경우) * 국민의 자녀인 경우 3번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출생증명서로 대체 가능
	한국인 2세 관련자	- 친자확인 소송 등 국민의 자녀임을 다투고 있는 외국인 및 그 양육자 - 인지판결을 받은 외국인 및 그 양육자 ※ 양육자는 피양육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동반 사증신청 가능	1. (법원이 소송에 반드시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원의 출석요구서 등 입국 필요성 입증 서류 2. (인지판결 후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 인지판결문 등 3. (양육자) -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계확인 서류
	어학연수	- 단기간(90일 이내) 어학연수를 하려는 자	1. 표준입학허가서 2. 학비납부증명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외국인 투자자 (C-3-1)	국내법인 투자자	- 한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투자 목적으로 1억원 이상을 국내로 송금 완료한 자	1. 중국 금융기관 발행 해외 송금확인증 * 송금목적: '투자'로 기재 ** 송금자와 비자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공익사업 투자자	- 공익사업 투자이민 목적으로 5억원(55세 이상 3억원) 이상을 국내로 송금 완료한 자	1. 중국 또는 제 3국 금융기관 발행 해외 송금확인증

목차▲

2) 일반관광 (C-3-9)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단체관광 (C-3-2)	- 한 중 양국정부 지정 전담여행사가 초청하는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	※ 자세한 내용은 당관 지정 여행사로 문의
관광 일반관광 (C-3-9)	-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재정능력 입증서류 ① (원칙) 사회보험가입증명 및 재직증명 제출 ② (위 서류가 없는 경우) 급여(소득)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최근 6개월분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및 최근 6개월간의 개인소득세 납부증명 원본 ※ 아래 대상은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해당 서류 제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 상하이 등 복수사증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대도시 지역 호구자 ⇒ 신분증 원.사본 ■ 초 · 중학생 ⇒ 재학증명서 ■ 대학생 ⇒ 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망 (www.chsi.com.cn) 전자학력인증서류 ■ 복수사증 신청 대상자 ☞ 바로가기(①~⑩) ⇒ 복수사증 대상별 구비서류 ■ 우수대행사 신청자 (우수대행사 명단 참조) ■ 중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 OECD 국가 중 22개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 OECD 국가 사증 및 출입국 스템프 원.사본, 출입국기록 조회서(공안국 발급) <p style="text-align: center;">————— 《22개국가》 —————</p> <p style="font-size: small;">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p> </div>

3) 의료관광 (C-3-3)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 체류기간 30일/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의료관광(C-3-3) 및 장기 의료사증(G-1-10)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신청서를 발급 받아 신청 하여야하나 의료관광(C-3-3)사증은 공관에서도 신청 가능(단,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한국측 구비서류)
단기 의료관광 (C-3-3)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의 초청을 받아 건강검진, 질병치료, 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환자유치기관은 www.medicalkorea.or.kr 에서 확인 -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간병인 ※ 단수사증 - (단순 건강검진) 체류기간 30일 이하 - (질병치료) 체류기간 90일 이하 ※ 복수사증 : 5년 이내 유효, 체류기간 30일 이하	1. 초청장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 (단순 건강검진) 해당병원 예약증 - (특별질병 등 치료) 한국 또는 본국의 진단서, 소견서 등과 한국 소재 병원의 예약증 3. 보건복지부 의료관광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4. 동반가족 또는 간병인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5. 재정능력 입증서류 ※ 아래 대상은 재정능력 입증서류 면제 또는 대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사증 신청대상자 (복수사증 대상별 구비서류 제출) ☞ 바로가기(①~⑩) - 국외판 등의 치료비 지원으로 초청시 관련 입증서류 - 우수대행사 신청자 (우수대행사 명단 참조) </div>

목차▲

4) 단기상용 (C-3-4)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한국측 구비서류)
단기상용 (C-3-4)	일반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단기취업 (C-4-5) 사증 신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인감날인)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인감증명서(초청장 날인 인감) 3. 납부내역증명(사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4. 거래실적 입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신고필증, L/C사본, 수출입실적 확인서,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등 5.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간소화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본사 또는 지사, 국내 상장기업에서 초청한 자 - 복수사증 신청 대상자 ☞ 바로가기(①~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4. 복수사증 신청 대상자의 경우, 복수사증 대상별 구비서류 제출

5) 순수환승 (C-3-10)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수수료

※ 체류기간 0일, 유효기간 3개월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순수환승 (C-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 수단, 예멘, 이집트의 일반여권 소지자가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 대상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가 환승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 탑승제한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순수환승(C-3-10) 사증없이 환승 가능 	<p>여행계획서 (지정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공항만을 환승지점으로 정한 이유 등

목차▲

4. 단기취업 (C-4-5)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단기취업 (C-4-5)	<p>- 일시휴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p> <p>-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p> <p>↳ 작품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p> <p>-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p> <p>※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C-4-1~4)가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함</p>	<p><일시휴행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명, 인감증명서(초청장 날인 인감) 고용계약서 또는 경기 참가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및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목적별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나 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아래 참조) <p style="text-align: center;">《목적별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및 공연계획서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 광고.패션모델 :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서 ■ 방송출연자 등 :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용추천서 ■ 프로 바둑기사, 프로축구 등 운동선수, 지도자, 심판 등 : 소속협회(연맹)의 고용추천서, 주무부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의 활용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p><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납부내역증명(사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거래실적 입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신고필증, L/C사본, 수출입실적 확인서, 구매계약서(수입기계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의무가 포함되어야 함), 사업추진의향서 등 국내 조달이 어려운 기술인지 소명자료 및 신청인이 동 의무를 위한 필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관련 자격증, 학위증명 또는 해당분야 실적 등)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목차▲

5. 유학 (D-2-1 내지 D-2-8) 및 어학연수 (D-4-1)

■ 대상별 사증발급 유형표('19.10.1부)

대학별		학생유형	사증발급	사증발급 인정서	전자비자
인증대학	우수인증대	어학연수(D-4-1)	○	○	×
		유학(D-2-1~8)	○	○	○
	인증대	어학연수(D-4-1), 유학(D-2-1~8)	○	×	×
		석사(D-2-3), 박사(D-2-4)	○	×	○
일반대학		어학연수(D-4-1)	×	○	×
		유학(D-2-1~8)	○	×	×
하위대학	컨설팅대	D-2-1~5, D-2-7	○	×	×
		D-4-1, D-2-6, D-2-8	×	○	×
	비자제한	D-2-4, D-2-5, D-2-6	×	○	×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 여권, 신분증, 결핵진단서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아래 표에서 정한 학위 과정별로 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망(학신망, www.chsi.com.cn)의 전자학력인증서류 출력 제출

구분	입증내용	제출서류 (아래 서류 외 불인정)
어학연수과정(D-4-1)	고교 졸업 이상 학력	
신입학 (D-2-1~D-2-4)	전문학사	◇ 일반 고교 학력 CHSI (中国中等教育学历验证报告)
	학사	
	석사	
	박사	
편입학 (D-2-1~D-2-4)	전문학사	◇ 전문학사 학력 (재학) CHSI (教育部学籍在线验证报告) (졸업) CHSI (教育部学历证书电子注册备案表)
	학사	
	석사	
	박사	
교환학생 (D-2-6)	전문학사	◇ 학사 이상 학력 (재학) CHSI (教育部学籍在线验证报告) (졸업) CHSI (教育部学历证书电子注册备案表)
	학사	
	석사	
	박사	
방문학생 (D-2-8)	전문학사	또는 CDGDC(教育部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认证报告)
	학사	
	석사	
	박사	
연구유학 (D-2-5)	-	석사 학위 이상 취득 사실

※ 국내 대학 학위 취득자: 국내 대학 발행 졸업증명서와 학위증

※ 단, 중국 직업·예술고 및 국제고 졸업자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 정부 설립 인가증 사본(주중공관 한국영사확인)을 첨부하여 아래 서류 중 택1 제출

- i)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중국 교육 당국*과 주중공관 한국 영사확인 필수)
- ii) 중국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iii)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소속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부처 공식 홈페이지 조회서 인쇄본(캡처본)

* 성교육청(시교육국) 또는 설립 인가 부처(기관)

■ 재정능력 입증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상 소요경비(등록금+생활비)를 입증하는 은행잔고증명서 원본(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 . 은행잔고증명서의 금액(1년 기준): 수도권대학은 14만 위안 상당, 지방대학은 12만 5천위안 상당
- . 예금동결 유효기간: (인증/일반대학) 사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하위대학) 6개월 이상
- 부모 명의 서류일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추가제출, 장학생 선발자의 경우 장학금 증명서 제출

※ 우수인증대학 입학예정자는 공통서류, 표준입학허가서만 제출(단, D-2-5제외)

※ 하위대학 입학(편입)예정자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추가제출.

- 토픽 4급이상(전문학사는 3급이상), 단 교환학생(D-2-6)은 토픽 2급이상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전문학사 내지 박사과정 (D-2-1 내지 D-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전문대학 내지 박사과정의 교육기관에 유학하고자 하는 자 ※ 우수인증대학 유학(D2)자격 입학예정자 및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입학예정자는 전자사증 발급신청 가능 (비자포털: www.visa.go.kr)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입학허가서 2. 입학예정학교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3. 최종학력 입증서류 4. 재정능력 입증서류
특정연구과정 (D-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기관에서 특정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예외적으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본국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연구생 확인서(지정 서식) ※ 반드시 대학 총장 직인 날인 2. 입학예정학교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3.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 이상) 4.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5. 특정연구과정 입증서류
교환학생 (D-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대학 간 체결한 교류협정에 따라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4년제 대학(정규 학사과정이 3년제인 경우 포함) 또는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상 수료한 자 (재학생) ② 국내 초청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된 자 ③ 과거 불법체류 등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입학허가서 2. 입학예정학교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3.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재학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4. 소속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5. 한·중 대학간 체결한 학생교류협정서(MOU) 6. 재정능력 입증서류
일-학습연계 학생 (D-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입학허가서 2. 입학예정학교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3. 국립국제교육원장 발행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증명서'
방문학생 (D-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대학 정규 학위과정 재학생(휴학생포함)으로서 국내 대학의 1년 이하 정규 학위과정에서 자비로 수학하고자 하는 유학생 ※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학위과정(계절학기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며,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교과 과정(특강, 아카데미 등)을 단기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C3 사증 발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입학허가서 2. 입학예정학교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3. 소속(본국)대학 재학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휴학 포함) 4. 재정능력 입증서류
한국어 어학연수 (D-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유학(D-2) 사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 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① 인증대학 입학예정자 ② 정부초청장학생 ※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입학허가서 2. 입학예정학교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3. 어학연수과정 운영 현황(대학 자율 서식) - 필수 기재사항 : 관리조직, 수강생현황, 강사(자격증 소지여부)현황, 연수 시간표, 수료생 한국어 취득현황, 시설현황 4.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5.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 구성표, 연수시설 등 내용 포함) 6. 재정능력 입증서류

6. 기업투자 (D-8)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법인투자 (D-8-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으로서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지정 「지역본부(제9조의4)」 또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	1.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및 인감날인), 주재활동의 경우 (해외)본사 발행 파견명령서(기간명시),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초청장 날인 인감)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3. 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4. 투자자금(1억원 이상, 본인명의 원칙*)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 본국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송금확인증 등 - 현물: 현물출자완료 확인서(관세청장 발행), 세관수입신고필증 사본 * 예외 인정 범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억 이상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추가인정 5.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 제출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국내 계좌 입출금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 실적 입증서류
개인기업투자 (D-8-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 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으로서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지정 「연구개발시설」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	1.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및 인감날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초청장 날인 인감) 2.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기간 명시), 재직증명서 제출 4. 투자자금(1억원 이상, 본인명의 원칙*)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 본국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송금확인증 등 - 현물: 현물출자완료 확인서(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예외 인정 범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억 이상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추가인정 5.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 제출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국내 계좌 입출금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 실적 입증서류

7. 무역경영 (D-9)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무역경영 (D-9-4)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 국민 고용 예정 서약자는 투자기준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증 신청 가능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해당자), 투자기업 등록증(소지자) 2. 공동사업약정서 원본/사본(해당자)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 포함 3. 사업자등록 도입(본인명의 원칙*)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 증명서, 세관신고서, 세관반출신고서 등) * 예외 인정 범위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억 이상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추가인정 4.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5. 영업실적 입증서류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6.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등) 7. 국민 고용 예정 서약서(해당자, 지정서식)

8. 구직 (D-10)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6개월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구직활동 (D-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 (E-6-2)은 제외 <p>▶ <u>점수제 적용 대상</u>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구직자격점수표에서 총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p> <p>▶ <u>점수제 면제 특례자</u>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①TOPIK 4급 이상 유효성적표 소지자,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③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p>	<p>▶ <u>점수제 적용 대상</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직활동계획서 (지정서식) ※ 월 단위로 구체적인 계획 기재 2. 학위증(아래 중 1가지만 제출) - 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 증명서 3.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재직(경력)증명서 - 국내 연수활동 증빙서류 (연수 수료증명서, 교환학생 경력 증명서 등)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고용추천서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4. 체재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가구 주거급여기준액×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p>▶ <u>점수제 면제 특례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직활동계획서 (지정서식) ※ 월 단위로 구체적인 계획 기재 2.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또는 졸업증명서) 3. TOPIK4급 유효성적표, 사회 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4. 체재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가구 주거급여기준액×체류개월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창업준비 (D-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①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자 ②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에 참여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해당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사실이 있는 자 ③ OECD 국가 지적재산권 보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창업계획서 (지정서식) ※ 월 단위로 구체적인 계획 기재 2. 학력증명서(아래 중 1가지만 제출) - 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 증명서 3.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확인서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4. 체재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가구 주거급여기준액×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9. 방문동거 (F-1)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결핵진단서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p>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p> <p>※(초청자)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 영주(F-5-2) 자취자 △고령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국적 취득자</p>	<p>(자녀* 양육지원 목적)</p> <p>* <u>자녀의 범위 :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으로서, ①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혼인관계(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②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자격으로 체류한 사람에 한함의 친자</u></p> <p>-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입국이 필요한 ①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②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사망 또는 질병, 고령의 이유로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및 전혼관계 출생자녀</p> <p>※ 다만,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초청가능</p> <p>• [임신 또는 돌봄]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자녀 1명당 1인 (부모 동사순차 초청 가능. 단 취업무불행시 초청제한)</p> <p>• [한부모 또는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신청일 기준 자취가 만 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자녀 1명당 1인(부모 동사순차 초청 가능. 초청 횟수제한 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2. 초청장(지정서식) 3. 신원보증서(지정서식, 보증기간 : 입국일로부터 3년) 4.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지정서식) 5. 거주지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6.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모든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7. (임신 또는 입양에 해당시) 산모수첩, 입양판결증명서 등 8. (영주권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부모배우자 명의 6번 서류 9.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0.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증명서 11. 가족관계입증서류(호구부 원.사본 등) 12. (부모 이외의 가족) 부모 입국 불가 사유 및 입증서류
<p>※ 다만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 없이 본국 가족 초청 가능</p> <p>※ 체류기간 90일 이하 (2022.1.3.시행)</p>	<p>(중증질환 또는 장애인 지원 목적)</p> <p>-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어 입국이 필요한 ①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②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및 전혼관계 출생자녀</p> <p>•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대상 해당자</p> <p>•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종합 장애 정도'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자</p> <p>※ 자녀 1명당 1인(부모 동사순차 초청 가능) 초청 가능. 초청 횟수제한 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2. 초청장(지정서식) 3. 신원보증서(지정서식, 보증기간 : 입국일로부터 3년) 4.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지정서식) 5. 거주지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6.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모든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7. (임신 또는 입양에 해당시) 산모수첩, 입양판결증명서 등 8. (영주권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부모배우자 명의 6번 서류 9.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0. (중증질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사실이 기재된 입증서류 11. (중증장애) 장애인증명서 등 12. 가족관계입증서류(호구부 원.사본 등)
<p>미성년 유학생 부모 (F-1-13)</p>	<p>-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미성년 유학생과 동반 체류 하려는 부모</p> <p>① 최근 3년 이내 2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p> <p>②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자진 출국하여 출국 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p> <p>※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수업료 납입증명서 3.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예치된 미화 1만불 이상 4. 재정능력 입증서류 -연간소득 2만 5천불 이상 또는 14만불 이상 자산 보유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5.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10. 거주 (F-2)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결핵진단서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F-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국적취득자의 중국 국적 자녀 등 복수국적 소지자가 아닌 경우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청장 (지정서식) 2. 주민등록증 사본 3.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지정서식) ※ 그 부 또는 모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 5. 양육권 보유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6. 호구부 원본 및 사본 7. 가족관계 입증자료(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진 등)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영주자격(F-5) 취득 후 3년이 경과해야 함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청장(지정서식), 결혼배경진술서(지정서식)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신원보증서(지정서식, 보증기간:입국일로부터 2년) 4. 혼인관계 입증서류 (영주자격소지자의 국가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5. 초청인 경제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및 배우자(피초청인)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공표자료 기준 2021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0,247,000원 단 동가족수가 3인 이하인 경우 GNI 70% 이상(28,172,900원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초청인의 영주자격 취득 전부터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예:F-1, F-3)을 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미성년자녀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청장 2. 초청인 영주증(외국인등록증) 사본 3. 호구부 원본 및 사본 4. 부모의 혼인관계 입증서류(영주자격소지자의 국가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이혼한 경우 자녀 양육권이 명시된 이혼판결문 또는 민사조해서 등 5.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주거요건 입증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7.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사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공증·인증을 하고, 반드시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도 제출 ※ 초청인은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거나 면제 대상이었으면 제출 생략 가능 ※ 초청인은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8.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된 것 - 일반항목 이외에 정신질환, 성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결핵진단서는 당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건만 인정(유효기간 3개월) 9. 호구부 원본 및 사본 10. 재혼인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 사본

11. 동반 (F-3)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동반 (F-3)	- D-1, D-2* , D-4 내지 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미혼인 자 * (초청자 요건) 국내 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u>유학(D-2-2~D-2-5, D-2-7) 자격으로 체류중인 자</u> ※ 동반하는 본인에게 정하여진 체류기간 내 1년 이하	1. 초청장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 (D-2 계열 소지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2.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D-2 계열 해당자 재학증명서, 잔고증명서 등) 3. (D-2 계열 해당자) 주거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4.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결혼증 또는 출생증명서 등)

12. 회화지도 (E-2)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결핵진단서
 ※ 최대 2년 범위 내 계약기간+1개월 체류기간의 단수사증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원어민 원격수업 지도교사 (E-2)	- 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자(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확대 추세 반영)	추후 공지 예정
회화지도 원어민 보조교사 (E-2-2)	- 각 시·도 교육청 직속기관* 소속 교사 * 각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따른 직속 기관으로 기구 사무분장에 원어민 회화강사의 관리 및 수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추후 공지 예정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E-2-2)	-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중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1. 초청장 (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 교육감 발급) 2. 시·도 교육감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3.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통지서

13. 결혼이민 (F-6)

□ **국민의 배우자(F-6-1)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급대상】한국인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중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 하려는 자

초청인 구비서류		피초청인 구비서류																																				
1.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지정서식) * 혼인 귀화인 경우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필요 2. 신원보증서 (지정서식) * 보증기간: 입국일로부터 2년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각 증명서 상세본 발급), 주민등록등본 4.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5. 경제능력 입증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 호구가 외지인 경우 거주증 추가 제출 2.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지정서식) 3. 결혼증 및 호구부 원본(혼인상향 반드시 기혼 또는 유배우자 로 표시)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이혼증, 이혼판결민사조해서 또는 사망의학증명서 등 입증서류 추가 제출 4. 의사소통요건 면제 대상 및 요건충족 입증서류 (택일)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공통 (필수)</td> <td colspan="2">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td> </tr> <tr> <td colspan="2">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발급)</td> </tr> <tr> <td rowspan="3">근로소득 활용시</td> <td>필수</td> <td>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발급)</td> </tr> <tr> <td rowspan="2">선택</td> <td>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td> </tr> <tr> <td>사업자등록증 사본</td> </tr> <tr> <td>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td> <td></td> </tr> <tr> <td rowspan="2">사업소득 활용시</td> <td>필수</td> <td>사업자등록증명원</td> </tr> <tr> <td>선택</td> <td>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td> </tr> <tr> <td>기타소득</td> <td colspan="2">기타 소득 및 재산 입증 서류 - 예금증명서 등</td> </tr> </table> <p>⇒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세전이 아래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022.1.1~12.31)</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h>7인가구</th> </tr> <tr> <td>소득 기준(원)</td> <td>19,560,510</td> <td>25,168,206</td> <td>30,726,480</td> <td>36,147,090</td> <td>41,442,024</td> <td>46,683,552</td> </tr> </table> <p>* 8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41,528원씩 증가 *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위 요건 미충족시 아래의 경우 소득요건 활용 가능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지정서식) 추가제출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자>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p> 6. 건강진단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 등 포함 7. 교제사실 등 혼인의 진정성 입증자료 (교제 및 결혼사진, 이메일, 인우 보증서 등) 8.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이수증 변회(출입국사무소 발급)		공통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발급)		근로소득 활용시	필수	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발급)	선택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사업소득 활용시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선택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소득	기타 소득 및 재산 입증 서류 - 예금증명서 등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 기준(원)	19,560,510	25,168,206	30,726,480	36,147,090	41,442,024	46,683,552	<면제 대상> - 초청인 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 경과 <요건충족 입증서류> - 피초청인이 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이거나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지정교육기관(세종학당)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초급 1급 이상) 이수한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 이 과거 결혼이민자 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 과 피초청인 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한 경우 귀화 전 국적국 언어를 의미)가 같은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사증심사 시 추가 심사)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 *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시 영사직접평가 실시	
공통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발급)																																					
근로소득 활용시	필수	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발급)																																				
	선택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사업소득 활용시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선택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소득	기타 소득 및 재산 입증 서류 - 예금증명서 등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 기준(원)	19,560,510	25,168,206	30,726,480	36,147,090	41,442,024	46,683,552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 면제 대상자>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및 피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필요		5. 범죄경력증명서 * 공증인증을 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도 제출 6. 건강진단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 등 포함 7. 해결진단서(당관 지정 병원 발급) - 초청인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5번 및 6번 항목의 서류 제출 불필요 단, 7번의 해결진단서는 필수제출																																				
		○ 신청인 직접 접수(대리접수 불가)만 가능하며, 사전에 예약 (☎ : 010)8532-0404 후 방문(재발급신청자 및 자녀임신)가 있는 경우 지정 대행사를 통해 신청 가능) ○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건강진단서는 6개월) ○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료 ○ 자녀 출생·임신을 이유로 요건면제가 필요한 경우 친자관계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대상 및 방법 참고) ○ 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 결혼이민(F-6-1) 사증 재발급 신청자(동일 배우자의 동일 초청에 한함)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																																				
		<table border="1"> <tr> <th>대상자</th> <th>공통 제출서류</th> <th>개별 제출서류</th> </tr> <tr> <td>체류기간 만료자)</td> <td>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신분증 원사본, 한국인 배우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사본 등 지정서식, 중국인 배우자의 기간내 미입국사유, 해결진단서(필요시 제출)류갑</td> <td>외국인등록증원사본</td> </tr> <tr> <td>유효기간 도과자)</td> <td></td> <td>유효기간외배우사본</td> </tr> </table>		대상자	공통 제출서류	개별 제출서류	체류기간 만료자)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신분증 원사본, 한국인 배우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사본 등 지정서식, 중국인 배우자의 기간내 미입국사유, 해결진단서(필요시 제출)류갑	외국인등록증원사본	유효기간 도과자)		유효기간외배우사본																										
대상자	공통 제출서류	개별 제출서류																																				
체류기간 만료자)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신분증 원사본, 한국인 배우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사본 등 지정서식, 중국인 배우자의 기간내 미입국사유, 해결진단서(필요시 제출)류갑	외국인등록증원사본																																				
유효기간 도과자)		유효기간외배우사본																																				

1) 자녀 출생을 이유로 결혼이민(F-6-1) 자격 요건면제가 필요한 경우 **DNA검사를 통한 친자관계 확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1) 사증발급 불허전력이 있는 경우 · 부부의 나이 차이가 20세 이상인 경우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부부의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다만 임신 후 사증신청 시까지 외국인 배우자를 5회 이상 방문하거나, 임신 후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제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방문한 경우도 인정)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재외공관장(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 DNA검사 의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한 기관 중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받은 DNA검사 결과 제출 · 주재국 법령에 따라 공인된 DNA검사 기관 중 재외공관장이 지정한 기관 ⇒ 위 세 가지 방법 중 선택 활용

2) 임신(20주 이후)을 이유로 결혼이민 자격 요건 면제가 필요한 경우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지정서식) 제출**

- 1) 결혼이민 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후 출국하여 결혼이민 사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2) 결혼이민 사증을 받았으나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로 사실상 유효기간 내에 입국할 수 없어 결혼이민 사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자녀 양육자(F-6-2)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자녀 양육자 (F-6-2)	-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1.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2. 자녀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육권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 자녀의 5촌 이내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 포함)의 양육입증확인서 등 3. 결핵진단서

더블 사증

※ 체류기간 30일 이내, 유효기간 6개월(단체사증은 유효기간 각 3개월)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개별 단기방문 (A1~A3, C1~C4)	- 단수사증 발급대상자로 6개월 이내 2회 출입국 하고자 하는 자	단수사증 신청서류와 동일
단체(C-3-2)	- 동일한 단체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재방문(예:한국-일본-한국)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사증 신청서류와 동일

복수 사증

1. 외교 (A-1)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매, 여권,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재입기간), 유효기간 3년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외교 (A-1)	- 한국 내 주재 중국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 관원 과 동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협정대상자)	1. 외교부의 협조공문 2. 가족관계 입증서류(동반가족)

목차▲

2. 단기방문 (C-3)

1) 공통 (단기일반)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5년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① 한국방문 우대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	1. 우대카드 사본 2.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 입증서류 (은행통장 또는 은행잔고 증명서로 해당 은행 확인) ※"금융기능 미탑재 우대카드"소지자는 생략 3. 가족관계 입증서류 사본 (호구부,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2) 공통 (단기일반)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단기일반 (C-3-1) 일반관광 (C-3-9) 단기상용 (C-3-4)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 <u>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사증 발급 가능</u>	교원, 교사 자격증 원/사본 및 재직 입증서류
	②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특정단체(협회 등)의 회원증 또는 기타 신분입증서류
	③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자	가이드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④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제외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 - 단체, 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2016.1.28.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출입국사실 입증서류 (사증 사본 등) ※ 의료관광의 경우 진료비 입증자료 추가 제출
	⑤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 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1. 거래실적 입증서류(수출입신고필증 등) 2.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⑥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재산입증자료

목차▲

⑦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재직증명서
⑧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투자입증서류 및 재직증명서
⑨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정기·전세기·부정기 등 불문)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⑩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 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재외공관장이 우수 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2)즈마신용점수 780점 이상 우수 회원 3)유니온페이 발급 프리미엄(플래티늄.다이아몬드) 신용카드 소지자	⑩-1)카드사용내역서(최근6개월) 및 카드사본 ⑩-2)알리페이 발급 신용평가서 (* 알리페이 → 芝麻信用 → 芝麻超能力 → 速办 → 材料减免 → 한국선택 → 신용평가서 출력) ⑩-3)유니온페이 발급 신용카드 앞면 사본 및 최근 3개월 간 월별 카드이용대금명세서
⑪ 월 5,000위안(연 60,000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 입증 공적서류 (최근 6개월의 개인소득세 납세증명 등)
⑫ 17세 미만, 55세 이상인 자	위 공통서류만 제출
⑬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망(학신망)의 전자학력인증서류 (www.chsi.com.cn에서 출력)
⑭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http://www.cec-ceda.org.cn 참조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⑮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 * 취득세 납부사실 증명서로 확인	취득세 납부증명서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원본/사본
⑯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C-3-8 복수사증 소지자, 17세 미만 55세 이상인 자, 4년제 대학 졸업생 또는 재학생 복수사증 소지자의 가족은 제외 **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 처리 지침에 따름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원본 등)
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쑤저우, 샤먼, 톈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 충칭 지역 호구자 ————— 《톈진시》 ————— -적용지역(10) : 和平区, 河北区, 河东区, 河西区, 南开区, 红桥区, 东丽区, 西青区, 北辰区, 津南区 -제외지역(6) : 静海区, 宁河区, 宝坻区, 蓟州区, 武清区, 滨海新区 ※ 당관 관할지 이외의 도시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공관에서 지정한 지역(区)만 신청가능 ☞ 중국 내 도시별 복수사증 지정현황 바로가기	신분증 원본
⑱ OECD 국가 중 아래 22개 국가의 방문사증을 소지하고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 《22개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1. 출입국사실 입증서류 - OECD 국가 사증 및 출입국 스탬프 원사본 2. 출입국기록 조회서(공안국 발급) - 제3국을 경유하여 OECD 국가에 입국한 경우에는 OECD 국가로의 출입국경로가 확인되는 여행경로 확인서류(항공권 등) 추가 제출

3) 공통 (유효기간 10년)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관련사항 입증서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10년

① 의사·변호사, 교수*, 공·사기업**대표 등 전문 직업인 *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해당, 기타 전임강사 등 교수직의 경우는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대상 ** 사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 이상 ※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유효기간 5년)
② 한국내 4년제 대학 학사(졸업자 포함) 이상 또는 중국 등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만 가능(유효기간 5년)

4) 단기일반 (C-3-1)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외교공관원 등과 비동반 가족 (협정대상자) - 유효기간 1년	-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1. 외교부의 협조공한 2. 가족관계입증서류(호구부 등) ※ 수수료 면제
단기일반 (C-3-1)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부모 및 미성년자녀 - 복수국적 미성년자녀는 유효기간 1년	-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거주목적 이외의 사유로 단기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 결혼이민(F-6-1) 목적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불가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자녀	1. 초청장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4. 호구부 원.사본(혼인상황 신고필요) 5.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등) 6. 거주증 (호구부가 외지인 경우) * 국민의 자녀인 경우 3번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출생증명서로 대체 가능
국적취득자의 가족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자녀	1. 초청장 2.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3.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출생 증명서 등)

5) 동포방문 (C-3-8)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동포방문 (C-3-8)	외국국적 동포로서 만60세 미만인 자	1. 호구부 원본 및 사본 2. 범죄경력증명서(공증인증을 하고, 반드시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도 제출,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및 출입경기록조회결과서* ※ ①국적국 범죄기록증명서 제출, ②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제3국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 범죄경력증명서류 추가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자는 국가이민관리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서 추가제출조건: 사증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 ①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②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목차▲

3. 취재, 주재, 기업투자 (D-5, D-7, D-8) 및 동반가족 (F-3)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결핵진단서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취재 (D-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주재 중국 언론사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국내 지사 등에서 취재·보도 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 통역, 행정, 운전 등)는 제외 ※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자격에 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견(출장)증명서 2. 재직증명서 또는 기자증(외신보도증) 3. 영업집조부분(조직기구대마증)의 사본
주재 (D-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의 회사 등에 필수 전문 인력 (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유효기간 2년 이내의 복수사증 발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청자(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및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초청장 날인 인감), 사업자등록증명 2.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3. 영업자금 도입실적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4. 연간 납부내역 증명서(비영리 연락 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5. 본사파견명령서 및 경력증명서 6. 본사 설립관련 서류(영업집조 포함)
기업투자 (D-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으로서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지정 「지역본부(제9조의4)」 또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 ※ 유효기간 2년 이내의 복수사증 발급, 수수료 면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및 인감날인), 주재활동의 경우 (해외)본사 발행 파견명령서(기간명시),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초청장 날인 인감)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4. 투자금(1억원 이상 본인명의 원천) 도입관련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본국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송금확인증 등 - 현물: 현물출자완료 확인서(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p>* 예외 인정 범위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억 이상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추가인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국내 계좌 입출금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 실적 입증서류
동반가족 (F-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재(D-7), 기업투자(D-8)의 동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 부모 ※ 한-중 간 복수사증발급 협정 대상자만 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7 또는 D-8 사증소지자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2.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등)

4. 방문동거 (F-1)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결핵진단서

※ 재외동포(F-4)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

※ 방문취업(H-2)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 재외동포(F-4-30)의 부모 :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재외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1-9)	[F-1-9]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거소 신고증 또는 사증 사본(여권 사본 포함) 2.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결혼증, 출생증명서 등)
방문 취업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1-11)	[F-1-11]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 거주지 입증자료(임대차 계약서 등) 4.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F-4-30)의 친부 또는 친모 (F-1-9)	-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F-4-30)의 친부 또는 친모('22. 1. 3. 시행)	1. 재외동포(F-4-30) 자격을 취득한 자의 거소신고증 2.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3.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F-4-30)의 재학증명서(학교장 발급)

5. 거주 (F-2)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5년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F-2-2)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F-2) 사증 제외 대상자 - 병역 이행 또는 병역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자격 부여 제한 ▶ 개정법 시행일('18.5.1)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1. 초청장(지정서식) 2. 신원보증서(지정서식) ※ 초청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함께 제출 3. 기본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증 사본 7. 국민과 해당 자녀와의 관계입증 서류 - 유전자 검사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등 8. 호구부 원본 및 사본 9. 가족관계 입증자료(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진 등)

6. 재외동포 (F-4)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결핵진단서(당관 지정병원 발급)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면제 대상 아래 참조
- 범죄경력증명서(공증.인증을 하고, 반드시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도 제출) 및 [출입경기록조회결과서](#)
- ※ 면제 대상 아래 참조

■ 사증종류 : 체류기간 2년, 유효기간 5년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택일, 유효기간 2년)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2단계 이상) : CIS지역 5개국만 시행

*러시아(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로스토프나도누), 키르기스(비슈케크) 카자흐스탄(알마티),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 한국어능력 면제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 ③ 60세 이상자
- ④ 한국에서「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 ⑤ 13세 이하인 사람(형사상 미성년자)
- ⑥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3년 이하 체류시에도 면제 가능. 단,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
- ⑦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및 출입경기록조회결과서*

- 제출대상 :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요건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6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 ①국적국 범죄기록증명서 제출, ②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제3국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 범죄경력증명서류 추가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자는 국가이민관리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서 추가 제출요건기간: 사증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 범죄경력 면제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60세 이상인 사람
-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상 미성년자)
-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④ 과거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면제 대상자 포함)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⑤ 18세 미만 캐나다 국적자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F-4-13	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위 공통서류만 제출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F-4-14	<p>②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졸업자)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 초청 장학생</p> <p>※ 국외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함</p> <p>②-1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정규학력인정 대안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한 사람</p>	<p>1. 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망의 전자학력인증서류 (①www.chsi.com.cn 에서 教育部学历证书电子注册备案表 및 ②www.cdgd.edu.cn 에서 教育部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 认证报告 출력)</p> <p>※ 중국지역 이외(해외) 졸업자 국외학력학위인증서(교육부 유학복무중심 발행) 제출</p> <p>2.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p>
F-4-15	③ OECD 국가(별첨)의 영주권 소지자	각국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F-4-16	<p>④ 법인 기업체 대표,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은 제한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전체2명 범위 내</p> <p>※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할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가능</p>	<p><법인대표 및 등기 임원의 경우></p> <p>1.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재직증명서 2. 비취업서약서(지정서식)</p> <p><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p> <p>1.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사항 사본 2. 소속업체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재직증명서 3.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지정서식) 4. 비취업서약서(지정서식)</p> <p>※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 사증발급 가능</p>
F-4-17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 (자영업 대표)	<p>1.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2. 증치세 등 매출실적 증빙자료</p>
F-4-18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상당), 2급(대학부교수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개발연구원, 중급 이상의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분야 고급기술자	<p>1.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재직증명서 및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p> <p>. 농업기술자: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관련 기술 자격증</p>
F-4-19	<p>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 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이내</p> <p>※ 동포단체 : 각지역 조선족기업가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p> <p>-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 가능</p>	<p><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p> <p>1. 소속단체의 등록증명서 2. 동포단체 현황표(지정서식) 3. 동포단체 대표추천서(지정서식) 4. 재직증명서 5. 비취업서약서(지정서식)</p> <p><국내 동포지원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p> <p>1. 소속단체의 등록증명서 2. 동포단체 대표추천서(지정서식) 3. 재직증명서 4. 비취업서약서(지정서식)</p>

F-4-20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F-4-21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1. 재직증명서 2.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교사)자격증
F-4-22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1.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 내역 등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등록 신청서 제출 불요 2.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국민 고용예정서약서 제출 3. 비취업서약서 (지정서식)
F-4-25	⑪ 만 60세 이상인 자	위 공통서류만 제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F-4-27	⑫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까지만 인정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및 사본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건설분야 포함)
F-4-29	⑬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3호의 고등학교 (고등기술 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4~5호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 학교 고등교육과정 졸업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제주학교 등 졸업자는 국내 학력인정 교과목 1과목*1학기이상 이수 입증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추가 제출 * 국어, 사회, 국사, 역사 등
F-4-99	⑭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중 범법행위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 등은 제외	위 공통서류만 제출

목차▲

7. 영주 (F-5)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상한 없음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고액투자자 (F-5)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3. 고용된 국민 5인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8. 방문취업 (H-2)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결핵진단서(당관 지정병원 발급)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면제 대상 아래 참조 / 동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1년 이내 사증 발급
- 범죄경력증명서(공증.인증을 하고, 반드시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도 제출) 및 출입경기록조회결과서
※ 면제 대상 아래 참조

■ 사증종류 :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3년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택일)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급(1A, 1B 모두 이수) 이상 수료증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2단계 이상) : CIS지역 4개국만 시행
*키르기스(비슈케크), 카자흐스탄(알마티),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 한국어능력 면제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 ③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 ④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 범죄경력증명서 및 출입경기록조회결과서*

- 제출대상 :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요건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6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①국적국 범죄기록증명서 제출, ②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제3국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자는 국가이민관리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서 추가 제출요구기간: 사증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 범죄경력 면제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60세 이상인 사람
- ②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③ 과거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면제 대상자 포함)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④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사증 신청자 중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목차▲

1) 연고방취(H-2-1), 추첨방취(H-2-5)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연고방취 (H-2-1)	- 국내에 주소를 둔 국민, 영주자격자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인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예약 후 신청 * 국적취득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초청가능 * 1년(초청일 기준) 1명에 한하여 초청 가능 * 초청자와 초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초청한 인원을 합산하여 방문취업목적으로 3명이상을 초청한 경우 추가 초청 제한 * 연령제한 : 초청자 만31세 이상, 신청자 만25세 이상	1. 초청사유서 (지정서식) 2. 신원보증서 (지정서식) 3.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4. 친척관계입증서류 - 친척관계진술서 (지정서식) - 가계도 및 사진자료 - 중국공적공부상 친인척 증명자료 - 제적등본, 족보, 장기왕래서신, 사망증명서, 호구말소증명서 등 5. 건강상태확인서 (지정서식) 6. 방문사전예약확인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1. 가족관계증명서 2.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증 및 수여증서 3. 친척관계입증서류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자	1. 훈·포장증서 또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추첨방취 (H-2-5)	- 아래 연도별 방문취업(H-2-5) 사증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무연고 중국동포	1. 건강상태확인서 (지정서식) 2. 동포방문(C-3-8) 사증 복사본	
	■ 연도별 방문취업(H-2-5) 사증 신청대상 (18세 미만 제외)		
	2020년 신청대상		2015년, 2016년 발급 C-3-8 사증 소지자
	2021년 신청대상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2년 신청대상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3년 신청대상	2021년 이후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2020.7.1.부터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2) 만기방취(H-2-7),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만기방취 (H-2-7)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만기출국한 자로서 만기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 인 자 ※ 만기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 후 사증 신청 (2020.5.11.부터 시행)	1. 건강상태확인서 (지정서식)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 ※ 국내 체류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단기체류 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국내(한국)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 국내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후 출국 확인서를 받고 입국한 자 (출국당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한 자) ※ 한국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 사증신청 가능	1. 자진신고 후 출국하여 중국정부에서 새로 발급 받은 여권 2. 출국확인서 3. 중국에서 새로 발급한 제2대 신분증 원본